교육과정 편성·이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18. 01. 29.

제1차 개정 2019. 01. 25.

제2차 개정 2019. 08. 06.

제3차 개정 2020. 02. 28.

소관부서: 교학처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신대학교 학칙」 제2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과 부합하는 핵심역량이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목표) ① 교양교육의 교육목표는 바른 인성을 갖춘 윤리적 인재양성, 융·복합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 지역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실천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20.02.28.〉
 - ② 전공교육의 교육목표는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맞춤형 역량을 갖춘 융·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제3조(교육역량) 「창신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2조의 교육목표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5대 핵심역량을 선정하고, 전공 관련 분야에서 요구하는 전공능력을 전공역량으로 선정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1. 창의융합역량: 지식탐구의 방법을 습득하며 지식의 의미와 가치를 통찰하고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결합, 이를 현실에 실천하고, 지식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
 - 2. 사랑헌신역량: 나, 너, 우리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며 정직하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역량

- 3. 공감소통역량: 내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인식하여 집단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타인의 관계 속에서 공감하는 태도를 갖추는 역량
- 4. 다중시민역량: 한 국가, 세계 공동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 수용하며 주어진 상황이나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 해결하는 데 다양성을 열어둘 수 있는 역량
- 5. 네트워크역량: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정보와 지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람들과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역량
- 6. 전공역량(전공능력): 단과대학 또는 계열, 학과의 관련 분야에서 요구하는 직무, 과업,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복합적, 종합적 능력
- 제4조(주관부서)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의 주관부서는 교학처로 하되, 교양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은 카리스교양교육원이, 전공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학과를 통하여 실시한다.
- 제5조(용어의 정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교육과정"이라 함은 일정한 교육의 목표에 맞추고, 교육 내용과 정해진 수업의 교육 및 학습을 종합적으로 계획한 것을 총괄하여 말한다.
 - 2. "교과목" 이라 함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교과 단위를 말한다.
 - 3. "편성"이라 함은 영역의 구분, 교과목의 신설 및 폐지, 표준이수형태, 이수 규정, 이수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총괄하여 말한다.
 - 4. "이수"라 함은 개설된 교과목을 편성된 시간에 참여하고, 공부하여 마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그 결과를 학점으로 부여받는 것을 총괄하여 말한다.
 - 5. "운영"이라 함은 교과목 개설, 수업시간 편성, 담당교수 결정, 분반, 합반, 폐강 등 교과목의 운영에 관한 것을 총괄하여 말한다.
 - 6. "신설" 이라 함은 교과목을 신규로 개발하여 처음 나열하는 것을 말한다.
 - 7. "변경"이라 함은 교과목 영역, 국문·영문명칭, 학점구조, 이수학년·학기, 교과목개요, 교과목 이수규정 등 제반 변경사항을 말한다.
 - 8. "폐지" 라 함은 나열된 교과목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 9. "동일교과목"이라 함은 교과목명칭 변경 시 변경 전 교과목과 변경후 교과 목의 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 교과목의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상 같은 것으로 인정하여 변경 후 교과목의 이수는 변경 전 교과목의 재이수가 된다.
- 10. "대체교과목"이라 함은 교과목이 폐지되어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토록 지정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제 2 장 교육과정 편성

- 제6조(교육과정의 구분)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일반선택교육 과정, 교직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 ② 교양교육과정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양필수와 선택적으로 이수하는 교양선택 교과목으로 구성하되, 인문학적 교양인 양성을 위해 교양필수는 기초교양, 소양교양으로 교양선택은 균형교양, 일반교양으로 영역을 구분한다.<개정 2020.02.28.>
 - ③ 전공교육과정은 사전 이수가 필요한 전공기초,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필수와 선택적으로 이수하는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 ④ 일반선택교육과정은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제2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자유선택(다른 학과 교과목), 및 특별학점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 ⑤ 교직교육과정은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학과 학생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으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 제7조(편성단위) ① 교양교육과정은 학과(부)에 관계없이 통합적으로 편성한다.
 - ② 전공교육과정은 학과별로 편성하되, 학생의 입학연도·학년별로 편성할 수 있다.
 - ③ 교직 관련 학과는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④ 학과 개편 또는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해당 교육과정이 종료 된 경우에도 학적 변동자 등을 위하여 종료 직전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편성원칙) ①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 인재상 및 역량과 부합되고, 산업계 및 사회 요구를 반영하고, 전공교육과의 연계성, 학문적 변화와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되 지나치게 세분화되지 않게 편성하여야 한다.
 - ② 교과목을 신설할 경우 기존 교과목의 개설, 운영 및 질적 수준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기존 교과목의 통합 또는 폐지 등 관련 조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교과목편성) ① 교과목은 '이론 교과목', '이론과 실험·실습·실기(이하 "실습"이라 한다) 병행 교과목', '실습 교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이론 교과목은 주당 1시간씩 15주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편성하고, 실습 교과목은 주당 2시간씩 15주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편성한다. 다만, 간호학과의 임상실습과목은 3시간씩 15주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별도로 정하는 교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교과목당 학점 단위는 2학점이나 3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이론과 실습 병행 교과목이나 학과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0조(편성학점) 학과별 교육과정별 편성 학점은 최소 이수 학점 이상 편성하여 야 한다. 다만, 선택 교과목은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양교육과정 편성) ① 교양필수 중 기초교양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부영역으로 구분 편성한다.
 - 1. 의사소통 I 영역: 기초글쓰기(총 2학점), 심화글쓰기(총 2학점)</br>
 2020.00.00.>
 - 2. 의사소통 II 영역: English Communication I ~VI (총 6학점)<7개정 2020.02.28.>
 - 3. 소프트웨어 영역: SW와문제해결 [~][(총 4학점)
 - 4. 창의와 사유영역: 논리와사고(총 2학점)<신설 2020.02.28.>
- ② 교양필수 중 소양영역 교과목은 다음 각 호 세부영역으로 구분 편성하고 학점은 부여하지 않는다.<개정 2020.02.28.>
 - 1. 진로설계 영역: (학과별)맞춤형 진로설계 [~Ⅱ

- 2. 건학이념 영역: 종교와 사회 I~IV
- ③ 교양선택 중 균형영역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부영역별 최소 8학점이 상 편성한다.<개정 2020.02.28.×신설 2020.02.28.>
 - 1. 제1영역: 인문학
 - 2. 제2영역: 사회과학
 - 3. 제3영역: 자연과학
 - 4. 제4영역: 융·복합
- ④ 교양선택 중 일반교양영역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세부영역별 최소 6학점이상 편성하며, 그 밖의 6학점은 교양선택의 각 영역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0.02.28.><신설 2020.02.28.>
 - 1. 제1영역: 글로벌
 - 2. 제2영역: 취·창업
 - 3. 제3영역: 공동체
- 제12조(전공교육과정 편성) ① 전공교육과정에서 정한 교과목은 권장 이수 순서를 고려하여 학기별·학년별로 수직적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학과에서 편성한다.
 - ② 전공기초,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교과목은 균형 있게 구성함을 권장하나 학과 별 전공 특성을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다.
 - ③ 전공기초 교과목은 전공과목을 이수하기 전에 사전 이수가 필요한 교과목으로 편성하되, 학과별로 필수 또는 선택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④ 전공필수 교과목은 해당 전공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교과목으로 편성하되, 전공교육과정 졸업 소요학점의 1/2이내에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자격 및 면허 취득 등을 위한 학과에서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⑤ 전공선택 교과목은 다양한 전공교육의 심화를 위한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 제13조(일반선택교육과정 편성) 일반선택교육과정의 편성은 제6조제4항에 따라 편성 또는 운영되는 교과목 또는 과정으로 대체한다.
- 제14조(교직교육과정 편성) 교직교육과정의 편성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령시

행규칙에 따라 교과목을 편성한다.

- 제15조(복수전공 및 부전공)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전공교육과정 편성은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칙」 제56조 및 제59조에 따라 편성하되, 미리 교과목을 지정해 놓아야 한다.
- 제16조(융합전공) ①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을 융합하거나 전공교육과정과 교 양교육과정을 융합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전공교육과정을 융합전공이라 한다.
 - ② 융합전공의 설치는 명칭과 교육과정을 정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융합전공은 참여 학과(전공) 소속 교수들의 협의하에 책임학과를 지정하고, 융합전공주임교수를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 ④ 융합전공의 전공교육과정 편성은 39학점 이상으로 하고, 교과목은 참여 학과 (전공)에 이미 편성된 교과목을 중심으로 균형있게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신규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 ⑤ 융합전공 교육과정에 필요할 경우 비참여 학과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 ⑥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자가 일정 수 이하이거나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폐지여부를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⑦ 융합전공자가 융합전공 신청 전에 이수한 융합전공 관련 교과목은 최대 15 학점 범위 내에서 융합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융합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제1전공, 부전공과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9.08.06〉
 - ⑧ 융합전공의 신청 자격은 1학년 2개 학기 이상 수료하였거나 이수예정인 재학생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매학기 개시 전 교학처에서 별도 공지한다. 〈신설 2019.08.06〉

제 3 장 이 수

제17조(이수단위)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개설 교과목의 학점으로 한다.

- 제18조(교양교육과정 이수) ① 교양필수 교과목(이하 "교양필수과목"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학교 또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교양교육과정 교과목(이하 "교양과목"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 ② 교양과목은 36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양필수과목은 16학점 이상, 교양선택 교과목(이하 "교양선택과목" 이라 한다.)은 20학점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역별 이수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2.28.〉
 - 1. 교양필수과목은 기초교양영역과 소양영역의 교과목인 기초글쓰기, 심화 글 쓰기, English Communication I ~VI과 진로설계와 종교와사회 I ~IV 등 반드 시 포함하여 1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02.28.>
 - 2. 교양선택의 균형교양 4영역(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융·복합), 일반교양 3영역(글로벌, 취·창업, 공동체)별 1과목은 이수해야 한다. 그 외 6학점은 교양선택의 일반교양영역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02.28.〉
 - ③ 현장실습교과목이나 2+2 해외복수학위제, 교환학생의 경우는 교양 이수학점 의 예외 규정으로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20.02.28.>
 - ④ 단과대학 또는 학과의 특성에 따른 교육목표에 따라 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교양교육과정 이수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20.02.28.>
- 제19조(야간반· 2+2해외복수학위제 및 교환학생 교양이수)<개정 2020.02.28.> ① 야간반 학생은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양필수 기초교양의 의사소통 II 영역 중 4학점과 소양교양의 건학이념영역의 종교와사회 I ~ IV를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한다.
 - ② 2+2 해외복수학위제를 이수하는 학생은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양필수 기초교양의 의사소통 I (기초글쓰기, 심화글쓰기), 의사소통 II (English Communication I~III), 소프트웨어영역(SW와 문제해결 I~II) 등 11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양필수 소양교양영역의 진로설계(맞춤형진로설계 I~II), 건학이념(종교와사회 I~II) 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제20조(전공교육과정 이수) ① 학생은 전공필수 교과목(이하 "전공필수과목"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학교 또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교육과정 교과목(이하 "전공과목"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 ② 전공과목은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복수전공 및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45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학년별, 학기별 교과목 개설시기에 따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 제21조(일반선택교육과정 이수) 일반선택교육과정은 자유선택(다른 학과 교과목) 및 특별학점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한다.
- 제22조(교직교육과정 이수) 교직교육과정은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교직소양 6학점(3과목),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총 22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23조(장애학생 교육과정 이수) 장애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기준은 「장애학생지 원센터 운영규칙」 제6조에 따른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로 정한다.
- 제24조(복수전공과 부전공 이수) ① 1학년 2학기부터 다른 학과의 전공교육과정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간호학과, 유아교육과의 전공 교육과정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복수전공 대상 학과에서 지정하는 교과 목을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과목을 3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학과에서 이수한 전공필수과목이 복수전공의 전공필수과목과 중복될 경우 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중복 인정된 교과목에 해당하는 학점을 복수전공 의 전공선택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③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부전공 대상 학과에서 지정하는 교과목을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소속 학과에서 이수한 전공필수과목이 부전공의 전공필수과목과 중복될 경우 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중복 인정된 교과목에 해당하는 학점을 부전공의 전공선택과목

- 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제25조(융합전공 이수) ① 학생은 1학년 2학기부터 융합전공과정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 ② 융합전공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교육과정에 따라 복수전공은 39학점 이상, 부전공은 2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③ 융합전공과정 이수 시 소속 학과에서 이수한 전공필수과목이 융합전공의 전공필수과목과 중복될 경우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복수전공, 부전공 이수 포기) ①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 중 중도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에 이수포기원(별지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중도에 포기할 경우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일반선택교육과정 교과목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 4 장 운 영

제27조 삭제<개정 2019.1.25.>

- 제28조(교육과정 관리) ① 교학처는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개편일자, 시행시기, 경과조치, 회의록 등의 기록을 첨부하여 연도별로 철하여 보존한다.
 - ② 확정된 교육과정은 책자로 제작하여 배포 및 보관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하며, 별도로 대학요람 발간 주기에 맞추어 최신 교육과정을 대학요람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 교과목 코드는 전산관리하기 위해 코드부여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부여하고 중복 여부와 이중 과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제29조(교양교육과정 운영) ① 교양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개 이상의 분반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1강좌는 전임교원이 담당해야 한다.
 - ② 2개 이상의 분반 강좌는 동일 시간대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 ③ 100명 이상의 대규모 강의를 운영할 때는 대면수업과 이러닝수업을 병행 또는 이러닝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고, 대규모 강의는 튜터를 두어 수업 질관리를 한다.
- ④ 교양필수 외국어영역 교과목은 수강생의 수학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강좌를 개설·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0조(전공교육과정 운영) ① 전공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는 교과목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임교원 외의 자로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02.28.>
 - ② 학과나 전공에서 선수 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전공과목의 시간표는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등의 이수가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 제31조(수업담당교수) 수업 담당 교·강사는 매학기 수업운영 후 수업운영결과보고 서를 제31조의 교과목책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교과목책임교수) ①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모든 교과목은 교과목책임교수를 지정하여 운영하다.
 - ② 교과목책임교수는 전임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교과목책임교수는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작성 관리하며, 교과목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④ 매 학기말 교과목책임교수는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 또는 강사가 제출하는 제31조의 수업운영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교과목별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 제33조(교과목 개설) ① 교과목의 개설은 교육과정 편성표에 의한다. 다만, 교육과 정으로 편성된 교과목이라도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교양과목은 매 학기 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인원이 많은 경우 2개 이상 분반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③ 전공과목은 교과목당 1개 반을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인원이 많은 경우 2개 이상 분반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음악학과의 전공실기 교과

목은 교과목 특성에 따라 분반할 수 있다

제34조(폐강·분반 기준) ① 교과목별 수강신청자가 전공과목은 10명, 교양과목은 15명 미만(단, 영어회화는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강좌를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교과목의 성격, 강의실 규모 등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②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분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교과목의 성격, 강의실 규모 등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н	어 어 버	개설기준인원	분반증설	¬
구분	영 역 별	(수강정원)	기준인원	비고
	기초교양(의사소통 ㅣ)	50명		
	기초교양(의사소통 Ⅱ)	25명	ᆌᄊᆌᄌ	
	균형교양, 일반교양	50명	개설기준 인원 120%초과	
이론과목	일반교양(글로벌영역)	40명	[120/0포기	
	이러닝 교과목(교내)	100명		
	전공 이론	50명~100명	2개 분반	
	선당 이론	100명 초과	3개 분반	
실험·실습·	전산실기	40명	개설기준	
실기 과목	실험실습	40명	인원 120%초과	

- ③ 폐강되는 과목의 시간강의에 대한 강의료는 폐강 결정 이전까지 강의한 시간수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19.1.25.〉
- 제35조(수업시간표 및 강의정보제공) ① 교학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학기 수업 개시 1개월 이전까지 수업시간표를 작성·공고하여야 한다.
 - ② 수업시간표 공고 시 직전학기 해당과목의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수업시간은 주당 4일 이상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4일 이상 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 학기 수업시간표 작성일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7학기 이상은 예외로 한다.
 - ④ 학생들이 강의에 대한 예비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목의 개요, 담당교수, 강의계획, 성적평가방법, 수업시간표, 학사일정표 등을 수록한 수강편 람을 작성하여 책자 또는 홈페이지 등에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36조(수업시간) ① 주간수업은 09:10~18:00, 야간수업은 18:30~22:30으로 하고, 수업

- 시간은 주간수업 50분, 야간수업 45분, 이러닝수업 25분을 1시간으로 본다.
- ② 동일한 교과목의 수업은 3시간을 초과하여 연강할 수 없다. 다만, 실습 교과목, 외부 강사 담당 교과목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37조(수업시간배정순서) ① 수업시간의 배정순서는 교양교육과정 중, 소양교양, 기초교양, 균형교양, 일반교양 교과목을 우선 배정하며, 교직,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과목 등의 순서로 배정한다.<개정 2020.02.28.>
 - ② 실험·실습·실기시간은 오전과 오후로 분산 편성하여 실험실의 활용도를 높이며, 지정 강의실을 우선 배정한다.
 - ③ 교양선택과목은 그룹별로 우선 배정하여야 하므로 각 그룹별 시간대에는 다른 교과목(교양필수 및 전공과목)을 배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전공필수과목 수업시간은 복수전공, 부전공 등을 신청한 학생들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배정하여야 한다.
- 제38조(수업운영) ① 수업은 정해진 수업시간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을 휴강하게 될 때에는 휴·보강 계획을 사전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휴·보강 계획을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 ② 국경일 및 공휴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강기간에 결손부분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이러닝수업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운영하며, 강의대상과목은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9조(혼합강의) 대형 강좌의 경우 합동강의와 분반강의를 혼합하여 강의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사항은 전공과목은 교학처장이 교양과목은 카리스교양교육원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5 장 교육과정 개편 및 평가

제40조(개편 시기) 교육과정은 4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개편한다. 다만, 학과의 개편 또는 자격증 등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과의 교육과정 개 편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편할 수 있다.

- 제41조(적용 대상) 개편된 교육과정은 다음 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격증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부터 적용할 수 있다.
- 제42조(교과목 명칭변경 및 동일교과목 지정) ① 교과목 명칭변경, 학점구조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직전 학년 1학기 종강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 ② 교과목 명칭변경 등 교과목의 차이와 변경이 있더라도 본질상 같은 교과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된 교과목을 반드시 동일교과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③ 교과목의 명칭·내용 및 강의내용이 유사하고, 강의평가·교과목 평가 등에서 유사 교과목으로 판단된 교과목은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43조(개편원칙 및 절차) ① 교육과정의 개편은 교육과정의 개편 방향, 편성, 운영 및 평가 등의 지침과 개편안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 ② 교육과정 개편은 제40조에 의거하여 정기 개편과 수시 개편으로 구분한다. 수시 개편의 경우는 교과목의 신설, 폐지 및 변경의 경우에 한하며 교육과정 기 본 구조의 변경은 불허한다.
 - ③ 교육과정 정기 개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5.>
 - 1. 교육과정 개편 요구분석 및 연구(카리스교양교육원, 학과, 교학처) :재학생, 졸업생, 산업계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 학문적 변화, 사회적 요구, 관련 문헌조사, 교육과정 개선 및 개편 방향 연구
 - 2.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주관부서) :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 역량 등과 연계하고 제48조의 평가 및 환류결과를 반영하여 수립
 - 3. 교육과정 개편 계획 심의(교육과정운영위원회)
 - 4. 교육과정 개편안 심의(교육과정운영위원회, 교무위원회)
 - 5. 교육과정 개편안 확정(총장) 및 통보(주관부서)
 - ④ 교육과정의 수시 개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주관부서) :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 역량 등 과 연계하고 제48조의 평가 및 환류결과를 반영하여 수립
- 2. 교육과정 개편 계획 심의(교육과정운영위원회)
- 3. 교육과정 개편안 심의(교육과정운영위원회)
- 4. 교육과정 개편안 확정(총장) 및 통보(주관부서)
- ⑤ 교육과정 수시 개편의 개정 신청 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갖추어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 1. 개편 사유와 주요 골자
- 2. 신·구 교과목 대비표
- 3. 폐지되는 교과목의 대체 인정 교과목과 경과 규칙
- 4. 교육과정 개편안
- 5. 학과 교수회의록, 개편에 필요한 법령, 운영계획서 등
- 제44조(교과목 폐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 1. 3년 이상 개설하지 않은 교과목
 - 2. 각 대학의 폐지 요청 교과목
 - 3. 교과목 및 강의평가에서 폐지 대상 또는 폐지 권고 교과목으로 선정된 경우
 - 4. 교육목적상 더 이상 개설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교과목
- ②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개설학과에서 폐지유예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 제45조(대체교과목 지정) ① 교과목이 폐지되는 경우 대체교과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대체교과목은 폐지대상 교과목 개설학과에서 신청하고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 ② 폐지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한 대체교과목 지정은 할 수 없다. 다만, 재입학자 또는 졸업예정자에게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체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 제46조(학적 변동자의 교육과정 적용) ① 신 교육과정 적용 입학연도 전에 입학한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구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다만, 구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 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며, 신 교육과 정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 학과나 전공별 졸업(수료) 학점은 구 교육과정의 졸업(수료)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② 학적 변동자가 이수한 교육과정별 이수 교과목과 학점은 그대로 인정하되, 이수 학점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시켜야 한다.
- ③ 구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이 신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구 교육과정에서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된 경우 필수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 ④ 교육과정 개편으로 이수 구분별로 학점을 대체할 교과목이 없거나 이수 구분, 학년, 학기가 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자기 전공의 교과목 중에서 소속 학과나 전공에서 지정한 미이수 교과목을 이수하여 충족하고,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타 학과나 전공의 교과목 중에서 이수하도록 한다.
- 제47조(학적 변동자의 교양과목 적용) ① 신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양교육과정의 영역별 이수는 신 교육과정 적용 입학자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신 교육과정 적용 입학연도 전에 입학한 자로서 구 교육과정의 교양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신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 ③ 구 교육과정에서 교양과목 일부를 이수한 자는 부족한 교양학점을 신 교육 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 제48조(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①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평가 및 환류는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9.1.25.〉
 - 1. 매 학년도 말 교육과정 운영평가 실시 및 결과제출(교양교육원, 학과)
 - 2. 교육과정 성과분석 및 환류방안 도출(교양교육원)
 - 3. 교육과정 개편 및 환류계획 수립(주관부서)
 - 4. 교육과정 개편 및 환류계획 심의(교육과정운영위원회)
- ② 교육과정 평가 및 성과는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수업평가 결과, 수요 자 및 산업체 만족도 조사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며, 분석결과는 차기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교양과목 이수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다.

부 칙 <개정 2019. 1.25.>

이 규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08. 06.>

이 규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 00, 00.>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 (교양과목 이수 적용례) 제18조의 개정 규정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3. (경과조치) ①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다음과 같이 대체교과목을 적용한다.

구분	기존교과목		대체교과목			n) =	
	과목명	시수	학점	과목명	시수	학점	비고
	종교와사회Ⅲ・Ⅳ	1	1	종교와사회Ⅲ·Ⅳ	1	1	
필수	영어회화Ⅲ·Ⅳ	2	2	영어회화Ⅲ・Ⅳ	2	2	
	맞춤형진로설계	2	2	맞춤형진로설계Ⅰ·Ⅱ	1	1	
	사회봉사와시민의삶	2	2	지역사회봉사	2	2	
	독서와소통	2	2	심화글쓰기	2	2	
선택	융합영역	3	3	균형교양 융복합	2	2	
	균형영역	3	3	균형교양	2	2	균형교양 2개 영역 이상

② 2020학년도 이전 야간반학생은 다음과 같이 대체교과목을 적용한다.

구분	기존교과목			대체교과목			n) –
	과목명	시수	학점	과목명	시수	학점	비고
필수 -	종교와사회Ⅲ・Ⅳ	1	1	종교와사회Ⅲ·N	1	1	
	영어회화Ⅲ·Ⅳ	2	2	영어회화Ⅲ·Ⅳ	2	2	
선택	균형영역	3	3	균형교양	2	2	균형교양 2개 영역 이상

③ 2020학년도 이전 외국인유학생은 다음과 같이 대체교과목을 적용한다.

구분	기존교과목			대체교과목			v) =
	과목명	시수	학점	과목명	시수	학점	비고
필수	종교와사회Ⅲ·Ⅳ	1	1	종교와사회Ⅲ・Ⅳ	1	1	
19十一	영어회화Ⅲ·Ⅳ	2	2	영어회화Ⅲ·N	2	2	
선택	한국어의이해 한국사회와문화 한국문화의이해	3	3	Practical Korean I • II	2	2	

④ 2020학년도 이전 2+2 해외복수학위 학생은 다음과 같이 대체교과목을 적용한다.

구분	기존교과목			대체교과목			w) =
	과목명	시수	학점	과목명	시수	학점	비고
필수	종교와사회Ⅲ・Ⅳ	1	1	종교와사회Ⅲ・Ⅳ	1	1	
	영어회화Ⅲ·Ⅳ	2	2	영어회화Ⅲ·Ⅳ	2	2	
선택	협약대학 교양과목	3	3				전공선택으로 인정

복수전공.	부전공 취소원	담 당	과 장	부처장	처 장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복수전공 취소학과			전공 ₂ 학과		
아래와 같은 시 취소 사유 :	⊦유로 복수전공·부전공 ^최 년 월 신청인(학생)			(인)	
교학처장 귀하					
			지도	교수	학과장